성주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·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

1. 제 안 자 : 성주군수

2. 개정이유

○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개정에따른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기 위해 개정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○ 현행 조례 규정을 상위 법령의 규정과 동일하게 개정 등 정비

- 계약심의위원회 구성(안 제2조)
 · 위원장 : 군 본청의 재무관 →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
- 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(안 제5조)
- 위원의 위촉 해제(안 제11조)
-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일치 및 상한금액 삭제(안 제12조)
 · 상한금액 삭제 : 3천만원 이상 2억원 이하 → 3천만원 이상인 공사

4. 참고사항

○ 관계법령 :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
○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○ 입법예고 : 의견 없음〔기간 : 2018. 8.23. ~ 9.12.(20일간)〕
○ 규제심사 : 해당사항 없음〔기획감사실-6025(2018. 8.13.)〕
○ 성별영향평가 : 개선사항 없음〔주민복지과-45320(2018. 8.13.)〕

5. 검토의견

○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써

○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 위원장 선발방법, 심의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에 관한 사항, 주민참여 감독자의 대상공사 상한금액 폐지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.

○ 법리 검토결과, 관련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 심사기준에 합당하며 본 조례의 상위법령의 취지와 내용에 부합하도록 변경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·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.